

GOVP1200211153

**사업명 :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및 보상제도 개정에
따른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책임연구자 : 박 기갑(고려대 법대 교수)

제출일 : 2002년 3월

주요 목 차

연구수행 경과 및 요지 설명 -----	3
1. 연구 목표 및 내용 -----	4
2.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 개정(안)에 대한 검토 -----	6
책임연구자가 제안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약관 개정(안)및 기존 약관과의 비교표 -----	14
2002년 체결된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약관 -----	54
3. 원자력손해배상 실무지침서 -----	67
4.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담보 방안연구 -----	93
5. 3억 SDR을 초과하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주체 및 조치방안 -----	97
결론 및 건의사항 -----	100

< 연구수행 결과 요지 설명 >

- 본 정책과제는 다음 사항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첫째, '새로운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이행방안 검토' 특히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원자력 책임보험 약관(안)을 검토하여 개선된 초안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2002년 2월에 체결된 관련 약관은 본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평가됨.

둘째,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개발하였음. 이를 위하여 2001년 11월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NEA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 및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셋째,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담보 방안연구로서 현행 법령과 보험체제를 검토한 연후에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였음.

넷째, 3억 SDR을 초과하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주체 및 조치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현행 법령상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책임연구자는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수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KINS,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 및 대한재보험 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과학기술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1. 연구 목표 및 내용

원자력손해배상법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기존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약관의 검토 및 적절한 개선책 제시와 더불어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이행방안 연구가 본 정책연구의 주된 목표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약관 개정안 검토 및 적절한 개선책 제시

기존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약관을 개정된 관련 국내법령과 비교하여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였음. 세부적 검토사항이 많았으며, 특히 기존 호기별 보험계약체제를 부지별 보험계약체제로의 전환여부 가능성검토, 원자력사고 시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재산 및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제도의 검토, 기존 보험약관이 명시하고 있는 각종 개념정의가 개정된 관련 법령과 조화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검토하였음.

본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는 기존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연후에 연구책임자가 개정 약관안을 제시하였으며, 2002년 2월에 체결된 새로운 책임보험약관은 본 정책연구의 결과를 대다수 반영하였다고 평가됨.

(2) 손해배상 실무지침서 발간

현행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및 국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핵심적 내용을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거나 실제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 연후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음.

이를 두가지로 구분하여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관련 주무부처, 원자력사업자 및 보험업계가 대책을 강구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사항들과 다음으로 원자력사고에 따른 피해가 인접국에게 미칠 경우 어떻게 당해 국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언급하였음. 설문지 형태로 된 실무지침서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실무가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담보 방안연구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는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예컨대 해일 또는 지진 등으로 말미암은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제3조1항)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제5조 1항) 배상조치의 형태로는 첫째, 국내 보험회사와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원자력손해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둘째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와 특별계약 즉 원자력손해 배상보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동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의 범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음.(원자력손해배상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동 정책연구과제에서는 관련 국내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4) 3억 SDR을 초과하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주체 및 조치방안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는 과거와는 달리 일 원자력 사고당 3억 SDR 한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함.(제3조의 2, 1항) 그런데 만일 총액 3억 SDR을 초과하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청구하는 잔여 배상액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해석상 애매모호함.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 SDR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3억 SDR을 배상하고 남은 7억 SDR은 누가 배상하는가? 물론 원자력손해 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제14조 1항)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의결에 따른 조건 및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제14조 3항)

본 정책연구과제에서는 문제의 초점을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유한책임제도에 불구하고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잔여배상을 행하도록 원조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만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음.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보충기금협약(CSC)에 가입하는 경우 배상절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본 정책연구과제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이하는 한수원과 재보험폴의 약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2-1. 전반적 검토의견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개정(안)과 한국원자력보험 “폴”의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개정(안)의 대부분은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른 문구의 정리와 담보기준(부지주의) 및 담보액수(사고당 500억원)의 변경을 반영한 것임.

이에 대한 보험약관개정(안)에 대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의 개정(안)과 한국원자력보험“폴”의 개정(안)이 거의 일치하며, 특별한 법리상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음.

※ 한국수력원자력의 개정(안)과 한국원자력보험“폴”의 개정(안)의 비교에서 양자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1) 「보상하는 손해」와 관련한 조문의 구성체계, (2) 「구상권불행사 특별약관」에서 제3자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구상권포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등 2가지로 압축됨.

2-2. 개별적 검토의견

3페이지, 3. 보험가입금액

(1) 의견

가. '원자력 재해'는 '원자력 손해'로 변경

나. '일반 재해'는 '일반 손해'로 변경

(2) 이유

자구 변경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와 제4조(용어의 정의)

(1) 의견

- 제3조와 제4조에 있어 한수원 개정안이 국내법 규정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한국원자력보험 “풀”의 개정안 중 제3조 2항은 제4조(용어의 정의)편으로 옮기는 편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2) 이유

- 한국수력원자력의 개정(안)과 한국원자력보험“풀”의 개정(안)의 사이에 실질적인 내용상의 차이점은 크지 않음. 단, 양자 사이에는 방제조치비용을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 둘 것인가(“풀”案) 아니면 ‘제4조 1항 원자력손해의 용어정리’에 둘 것인가(한수원 案)하는 차이가 있음. 제4조 1항의 원자력손해의 용어정리에 두는 한수원(안)이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법문과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 좋은 구성이라고 판단됨.
- 단, 한수원(안)에 따르는 경우에도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배상법조문과 같이 원자력손해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본문 상에 두기보다는 같은 조항 내의 독립된 号로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유는 보험약관상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배상법조문과 달리 원자력손해의 구체적 내용인 “인적피해”와 “물적손해”를 각각 1호와 2호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두었는데 굳이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만 본문 안에 두는 것은 원자력손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임.
- 한국원자력보험 “풀”의 개정안 중 1항 3호와 4호의 “의도되지 아니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영문표현으로 “sudden, accidental and unforeseen accident”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의미하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됨.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불식되고 있음. 즉 1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항의 2호: 시설의 정상운전에 따른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개정안은 “시설의 일상운전 중에 관계당국의 허용범위내에서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의한 누적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되어 있음)
등의 명문규정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된 사고’ 및 ‘우연하지 아니한 사고’는 당연히 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되고 있음.
- 이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양기관의 개정(안)과 私見의 비교

한수원 개정(안)	원자력보험 "폴" 개정(안)	私見
<p>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원자력손해 또는 일반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있어서</p> <p>①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에 의하여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합니다)와 비용을 말합니다.</p> <p>1.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인적피해</p> <p>2. 재물의 망그러뜨림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 등 물적손해</p> <p>3.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p> <p>4.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발생하게 할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한다)</p>	<p>제3조(보상하는 손해)</p> <p>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원자력손해 또는 일반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②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손해를 발생하게 할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p> <p>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있어서</p> <p>①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에 의하여 생긴 아래의 손해와 비용을 말합니다.</p> <p>1.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인적피해</p> <p>2. 재물의 망그러뜨림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 등 물적손해</p> <p>3. 의도되지 아니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이용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p> <p>4. 의도되지 아니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p>	<p>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원자력손해 또는 일반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있어서</p> <p>①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에 의하여 생긴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말합니다.</p> <p>1.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인적피해</p> <p>2. 재물의 망그러뜨림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 등 물적손해</p> <p>3.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p> <p>4.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p> <p>5.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발생하게 할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한다)</p>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의견 및 이유

- 2항 1호의 범위내에 테러리즘에 의해 야기된 손해 역시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함. 해석상 테러리즘은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임.
- 2항 3호의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폭풍 또는 이와 비슷한 풍수재”는 일단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되고 있으나 풍수재 및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손해보상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다만 특별약관에서 열거되고 있는 예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항 3호의 “천재지변” 및 2항 1호의 “해일, 홍수, 폭풍우 또는 낙뢰”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의문이 생김. 즉 특별약관에 예시된 자연재해는 모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험에서 담보하겠다는 의미인지? 그렇다면 법률시행령 제2조 2항 1호는 향후 법개정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신설되는 9항의 경우 한수원 개정안과 한국원자력보험 “플” 개정안 2개가 있으나 개정안은 “피보험자”로 용어를 통일하는 편이 적절할 것임. 따라서 한수원 개정안을 채택하되 다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4조 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 자체에 대한 방제조치와 관련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보상책임의 한도)

(1) 의견

책임보험료 책정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즉 1호기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부지당으로 할 것인가? 란 근본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 지난번 제3차 간담회 당시 나왔던 절충안은 보험계약시 부지주의에 의하면서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500억원, “보험기간보상한도액”은 ‘500억원 x 부지내의 호기수’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음. 이에 대해 책임연구자는 거의 대부분의 원자력국들이 부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기존 부지주의를 유지하되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원배법상 사업자의 책임한도수준까지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을 제안함.

(2) 이유

2001년 11월 24일부터 1주일간 OECD/NEA 원자력법위원회에서 책임연구자

가 수집한 각국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요약

- 부지주의 채택국가는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 대다수 국가들이며, 호기주의 채택국가는 독일, 스페인, 미국(특수한 법체제) 등 소수국가들임.
- 생각건대 한국 역시 종전처럼 부지주의를 계속 취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 다만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수 (3억 SDR, 대략 5천억원)와 배상조치액수, 즉 책임보험금액 (현행 500억원) 양자를 비교할 때 비록 자동복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는 하지만 1/10밖에 되질 않아 조속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무한배상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주요 선진원자력국들은 1사고당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수와 배상조치액수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음.

○ 각 국가별 정리

- 일본: 부지주의 채택, 1사고당 배상조치액수는 600억엔 (약 6억불)
- 캐나다: 부지주의 채택, 2부지에 8호기로 각 부지당 4호기 소재하고 있으며, 1사고당 배상조치액수는 7500만 캐나다 달러 그리고 보험료는 약 50만 캐나다 달러임. 참고로 2002년 3월로 예정된 개정안은 6억 5천만 캐나다 달러 그리고 보험료는 약 175만 캐나다 달러로 상향조정함.
- 영국: 부지주의 채택, 1사고당 2억 2500만 미화달러이며 보험료는 대략 50만불 정도임.
- 프랑스: 부지주의 채택, 영국과 유사하며 자동복원제도 도입
- 스위스: 부지주의 채택, 4개 부지에 5호기로 1부지에만 2개 호기 소재. 1사고시 10억 스위스 프랑씩 배상조치하며, 참고로 스위스는 사업자의 무한배상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음. 보험요율은 각 호기의 위험발생확률에 따라 달라짐.
- 벨기에: 부지주의 채택, 2개 부지에 7호기 (각 3개, 4개 호기 존재) 1사고당 120억 벨기에 프랑씩 배상조치함. (대략 3억 미화달러에 해당)
- 스페인: 호기주의 채택하나 사실상 부지주의와 유사함. 왜냐하면 7개 부지에 9개 호기 가동 중. (2부지에 각 2개 호기씩 소재하며, 나머지 5부지는 각 1개 호기씩 소재) 1사고당 1억 5000천만 미화달러씩 배상조치함.
- 독일: 호기주의 채택, 사업자의 무한배상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현행 18개 부지에 20호기 가동중. 1사고당 총 10억 독일마르크씩 배상조치함. 이 액수는 사업자의 책임보험과 정부의 공적자금 (각 50%)으로 충당함. 참고



로 2002년 3월 개정안에 의하면 1사고당 25억 유로 (대략 25억 미화달러)로 상향조정하며, 모두 사업자가 부담토록 함. 참고로 현 독일연방정부의 정책기조는 원자력에 대해 비우호적임.

구상권불행사 특별약관

(1) 의견

- 한수원 개정안과 한국원자력보험 “폴” 개정안을 비교할 때 후자의 안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범위가 넓어짐. 이러한 차이의 해결은 법리상 문제가 아닌 보험정책상 문제이므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상호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이유

- 한수원 (안)은 구상권불행사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을 “피보험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3자(불특정 제3자를 말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후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음.
- 반면, “폴”(안)은 동조를 “피보험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3자(불특정 제3자를 말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후나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후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음.
- 양자의 차이는 제3자의 고의 없이, 즉 과실에 의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구상권포기를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 한수원(안)에 의하면 동 특별약관에 의하여 구상권을 불행사하게 되지만, “폴”(안)에 의하면 동 특별약관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있음.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원자력사업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발생시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 특약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배법상으로는 한수원(안)과 “폴”(안)이 모두 가능할 것임.
- 결론적으로 이는 정책결정의 문제임. 단, “폴”(안)에 의하면 원배법을 참조하지 않는 한 제3자의 경과실에 기인한 경우도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여

지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의 발생하는기준이 보다 명확한 한수원(안)이 좋지 않을까 사료됨.

기타 조항들에 대한 의견

(1) 개정(안) 제8조 2항 1호

“군사나 찬탈정권”이라는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군사적인 정권찬탈”과 같은 뜻이라면 이렇게 함이 더 명확하리라 사료됨.

(2) 개정(안) 제18조 1항 4호

“회사가 요구하는 그밖의 서류”는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로 함이 보험회사의 재량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3) 개정(안) 제20조의 문제 (중복보험문제)

개정(안)은 제20조 1항에서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상액을 그 다른 계약에 의한 보상액과 비례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이는 중복보험의 경우 비례지급의 원칙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보여짐. 그런데 그 표현에서 “다른 계약”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계약에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 포함되느냐가 문제 될 수 있음. 만약 포함된다고 해석하게되면 본 조항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과기처 고시 제1987-17호) 제20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우려가 있음. 왜냐하면 고시약관 제20조에서는 책임보험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 중복되는 경우 1차적으로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잔존부분에 한하여 2차적으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개정(안) 제20조 1항의 “다른 계약”에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兩약관의 충돌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임. 실제 개정(안)에서는 제1조에서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고 합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제20조 1항의 “다른 계약”도 “다른 보험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규정은 보험법의 일반원칙인 중복보험시 비례지급이 원칙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단, 개정(안) 제 20조 1항의 현재 규정방법은 해석에서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계약”이라는 문구를 “다른 보험계약”으로 명시적으로 바꾸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4) 운송위험특별약관 제1조의 문제

제2항의 규정 중 “운송지에서 운송용구에의 하역작업을 완료할 때로부터”는 “운송지에서 운송용구에의 적재작업을 완료할 때로부터”로 바꾸어야 약관(안) 제6조 2호의 내용과 문구가 일치함.

(5) 풍수재 및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상기 제8조 관련 의견 참조

- 이 상 -

**책임연구자가 제안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 개정(안)**

및

기존 약관과의 비교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안)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보험약관의 교부)

- ① 회사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있어서

①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에 의하여 생긴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말합니다.

1.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인적피해
2. 재물의 망그러뜨림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 등 물적손해
3.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¹⁾
4.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²⁾

1) 본호의 문장 맨 앞에 “의도되지 아니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지 여부는 검토를 요함

2) 본호의 문장 맨 앞에 “의도되지 아니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지 여부는 검토를 요함

5.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발생하게 할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제조치비용(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한다)

② 일반손해라 함은 제①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아래의 손해를 말합니다.

1.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인적피해
2. 재물의 망그러뜨림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 등 물적손해

③ 핵연료 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④ 원자력사고라 함은 원자력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제 4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원자력손해 또는 일반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보험료)

-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6 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 7 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② 피보험자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③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승인을 받아 지급한 이자, 법률비용(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조정비용을 포함합니다.) 또는 조사 비용
- ④ 피보험자가 제17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 8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의 사유로 인한 배상책임
 1. 전쟁, 침략, 외적의 행동,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 내란, 모반, 혁명, 반란 또는 군사나 정권찬탈³⁾,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외의 목적으로 한 피보험자의 무기 또는 그 밖의 전쟁용구의 제조, 공급, 관리 또는 사용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폭풍 또는 이와 비슷한 풍수재
- ③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한 배상책임. 그러나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타인이 부담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계약으로 부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망가진 경우에는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가 입은 손해로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
- ⑥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원자력손해
 1. 시설의 일상운전 중에 관계당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의한 누적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시설 외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운송용구(구내전용은 제외합니다)에 적재작업이 끝난 후에, 시설 외로부터 시설 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운송용구(구내전용은 제외합니다)로부터 하역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핵연료물질⁴⁾에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3.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자력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원자력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10년⁵⁾이 지난 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핵연료물질이 도난, 분실, 투하, 내버려진 경우에 그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그와 같은 도난 등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 ⑦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일반손해

3) 현행 약관의 "찬탈정권"보다 "정권찬탈"이 올바른 표현으로 보임

4) "풀"(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5)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기에 "(다만, 신체상해, 질병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할지의 여부는 원자력책임보험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중 누가 위의 보상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6) "풀"(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1. 시설의 정상운전에 따른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2. 차량(동력이 인력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항공기 또는 선박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제외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행하는 의료상의 조치 또는 그 결과로 생긴 배상책임
- ⑧ 피보험자가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그러나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의료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⑨ 제3조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 자체에 대한 방제조치와 관련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0 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이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계약후 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관계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2. 관계당국의 시설검사, 성능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결과에 따른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3.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
-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에 따릅니다.

제 12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 13 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1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 ③ 위 제2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 제2항 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4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비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된 경우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계약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계약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 15 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 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의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주소와 성

명을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손해방지의 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존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응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
2. 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위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보험증권의 원본 또는 사본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 내에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상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조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보상책임의 한도)

회사의 보상책임의 한도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① 원자력손해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동안의 총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일반손해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동일한 원인의 사고의 손해를 말하며 사고의 시간과 장소 여하를 묻지 아니합니다)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기타비용(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비용)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 20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2 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청구권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 24 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국제조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제 26 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본 특별약관 부속별표(이하 「부속별표」라 합니다)에 기재된 핵연료물질⁷⁾을 시설 내에 반입하거나 시설 외로 반출하기 위한 운송 중에 그 핵연료물질⁸⁾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의 운송중이라 함은 핵연료물질⁹⁾이 제4조의 통지서에 기재된 운송지에서 운송용구에 적재작업을 완료할 때로부터 도착지에서 운송용구로부터의 하역작업이 개시되기까지를 말합니다.

제 2 조(보험료)

- ① 예탁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는 부속별표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말일에 보험료를 확정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예탁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징 또는 돌려드립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핵연료물질¹⁰⁾이나 그 용기 또는 포장의 망그러뜨림에 있어서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2. 핵연료물질¹¹⁾이 대한민국 외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을 벗어난 때로부터 또한 핵연료물질¹²⁾이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영역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원자력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제 4 조(운송의 통지)

- ① 피보험자는 핵연료물질¹³⁾을 운송할 때마다 빠짐없이 회사의 정해진 손해배상책임보험운송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합니다)로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통지서 기재사항 중 통지당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예정통지를 하고 추후 그의 확정사항을 위 제1항에 따라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위 제1항의 통지에 지체 또는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7) “플”(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8) “플”(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9) “플”(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10) “플”(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11) “플”(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12) “플”(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13) “플”(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피보험자가 자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통지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보상책임의 한도)

① 이 특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한도는 부속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1운송마다 각각 이를 적용합니다.

②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 보통약관 제19조의 규정은 이 특약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③ 위 제1항의 보상책임의 한도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핵연료물질¹⁴⁾을 발송 또는 수령하는 원자력 사업자로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상권불행사 특별약관

제 1 조

피보험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3자(불특정 제3자를 말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후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는 전항 본문의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14) “플”(안)과 한수원(안)에서 핵연료물질“등”이라는 표현은 변경을 요함.

풍수재 및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홍수, 고조, 해일, 태풍, 폭풍우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풍수재가 직접, 간접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반환 특별약관

제 1 조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동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 또는 면책이 인정된 경우에는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그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 2 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의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할 그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그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재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가 업무상으로 입은 신체상의 원자력재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용된 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또는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법령(이하 「재해보상법」이라 합니다)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 그의 종업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의하여 가

중되는 배상

2. 재해보상법에 의하여 보상하는 당해 보상자 또는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나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제 3 조(보상책임의 한도)

회사의 보상책임의 한도는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는 별도로 원(1인당 원)으로 합니다.

제 4 조(규정의 변경)

이 특약에서 보통약관 제8조 제6항 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제 1 조 본 증권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납입하기로 특별히 합의한다.

- 제1회 : 계약체결시 (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 제2회 : 년 월 일(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 제3회 : 년 월 일(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 제4회 : 년 월 일(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제 2 조 발생한 손해액이 납입된 분납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분납보험료를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 3 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약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 유예기간을 둡니다. 유예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유예기간 만료 7일전에 계약의 효력상실을 예고하고 그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 주요개정(안) 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담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별 담보 - 사고당 보상한도액(60억원) - 법정비용 등 방어비용 담보(한도액 언급 없음) - 손해사정비 재보험자에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별 담보 - 사고당(500억원) 및 보험기간 누적 보상한도액(1000억원) - 법정비용 등 방어비용 한도액 설정 - 손해사정비 한도액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액 증가 및 1회에 한하여 보상한도액 복원
보상하는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손해 : 인적손해, 물적손해 - 일반손해 : 인적, 물적손해 - 기타비용 : 법정방어비, 응급조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손해 : 인적손해, 물적손해(경제적 이익 상실포함), 환경손해, 방제조치비용 - 일반손해 : 인적, 물적손해 - 기타비용 : 법정방어비, 응급조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증권상 구체적 원자력손해는 법원 판결에 의함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운전에 따른 손해 -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 전쟁, 무기, 풍수재에 의한 손해 - 소멸시효 경과후 제기된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약관으로 풍수재 및 지진 위험담보
보험가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손해 : 60억원(사고당) - 일반손해 : 3억원(사고당) - 기타비용 : 한도액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손해 : 500억원(사고당) 1,000억원(보험기간) - 일반손해 : 50억원(사고당) - 기타비용 : 100억원 (법정비용 및 손해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당 담보에 따른 자동복원 개념 도입 - 사고당 원자력 손해의 10% - 사고당 원자력 손해의 20%
사용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권불행사특별약관 - 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 보험금반환 특별약관 - 풍수재 및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권불행사특별약관 - 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 보험금반환 특별약관 - 풍수재 및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권 불행사 특별약관 자구 정비 -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신설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증권</p> <p style="text-align: center;">증권번호 원책(시)제 호</p> <p>보험계약자</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보험회사는 년 월 일자 청약서에 따라 원자력손해 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및 기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오며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p> <p>1. 피 보 험 자</p> <p>2. 시 설</p>	<p>좌 동</p>	

현행	개정안	비고
3. 보험가입금액 - 원자력 재해 ₩ _____ - 일반 재해 ₩ _____	3. 보험가입금액 가. 원자력 재해 - 사고당 보험한도액 : ₩ _____ - 보험기간보상한도액 : ₩ _____ 나. 일반 재해 - 사고당 보상한도액 : ₩ _____ 다. 기타 비용 - 보험기간보상한도액 : ₩ _____	- 연간 총보상한도액·개념도입 (호기별가입 → Site별 가입) - 신설(기타비용 추가 보상)
4. 모 형 료 ₩ _____ 납입기일 년 월 일	좌 동	
5. 보 험 기 간 자 년 월 일 오후 4시 지 년 월 일 오후 4시	좌 동	
6. 보 험 금 지 급 지 _____	좌 동	
7. 증 권 작 성 지 _____ 증 권 작 성 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좌 동	

현행	개정안	비고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보험회사명</u></td> <td style="text-align: center;"><u>분담비율</u></td> </tr> <tr> <td> <p>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리젠트화재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재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p> <hr style="width: 20%;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100%</p> <p>이 보험증권은 상기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공동 보험증권으로서 각 보험회사는 상기 분담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p> <p>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한국원자력보험"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에 보내는 통지는 상기 전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로 간주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위대표인 한국원자력보험"플" 회장 </p> </td> <td></td> </tr> </table>	<u>보험회사명</u>	<u>분담비율</u>	<p>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리젠트화재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재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p> <hr style="width: 20%;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100%</p> <p>이 보험증권은 상기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공동 보험증권으로서 각 보험회사는 상기 분담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p> <p>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한국원자력보험"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에 보내는 통지는 상기 전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로 간주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위대표인 한국원자력보험"플" 회장 </p>		<p>좌 공</p>	
<u>보험회사명</u>	<u>분담비율</u>					
<p>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리젠트화재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재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p> <hr style="width: 20%;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100%</p> <p>이 보험증권은 상기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공동 보험증권으로서 각 보험회사는 상기 분담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p> <p>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한국원자력보험"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에 보내는 통지는 상기 전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로 간주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위대표인 한국원자력보험"플" 회장 </p>						

현행	개정안	비고
<p>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p> <p>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p> <p>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p> <p>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p> <p>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좌 등</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2 조(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p> <p>② 회사가 위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p> <p>제 3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원자력재해 또는 일반재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좌 동</p> <p>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있어서</p> <p>①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에 의하여 생긴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인적피해 2. 재물의 망그러뜨림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 등 물적손해 3.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¹⁾ 4.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²⁾ 5.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발생하게 할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제 조치비용(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한다) 	<p>보험폴 개정안의 "의도되지 아니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이란 문구는 국내법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4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있어서</p> <p>① 원자력재해라 함은 핵연료 물질 등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으로 인한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및 재물의 망그러뜨림(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p> <p>② 일반재해라 함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또는 재물의 망그러뜨림(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p> <p>③ 핵연료 물질 등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p>	<p>② 일반손해라 함은 제①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아래의 손해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인적피해 2. 재물의 망그러뜨림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 등 물적손해 <p>③ 핵연료 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p> <p>④ 원자력사고라함은 원자력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p> <p>제 4 조(보상하는 손해)</p> <p>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원자력손해 또는 일반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5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p> <p>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좌 동</p>	
<p>제 6 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증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p> <p>② 제 1항의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p>	<p>좌 동</p>	
<p>제 7 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p> <p>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p> <p>② 피보험자가 제16조의 제1항의 2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p> <p>③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p> <p>④ 피보험자가 제17조의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p>	<p>좌 동</p> <p>② 피보험자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p> <p>③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승인을 받아 지급한 이자, 법률비용(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조정비용을 포함합니다.) 또는 조사 비용</p>	<p>제7조는 ②와 ③의 문구를 변형시킴.</p>
<p>제 8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좌 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p> <p>②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의 사유로 인한 배상책임</p> <p>1. 전쟁, 침략, 외적의 행동,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 내란, 모반, 혁명, 반란 또는 군사나 찬탈정권,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p> <p>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외의 목적으로 한 피보험자의 무기 또는 그 밖의 전쟁용구의 제조, 공급, 관리 또는 사용</p> <p>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폭풍 또는 이와 비슷한 풍수재</p> <p>③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한 배상책임. 그러나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타인이 부담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계약으로 부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망가진 경우에는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p> <p>⑤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가 입은 <u>재해</u>로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p> <p>⑥ 원자력 <u>재해</u>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p>	<p>1. 전쟁, 침략, 외적의 행동,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 내란, 모반, 혁명, 반란 또는 군사나 <u>정권찬탈</u>,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p> <p>⑤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가 입은 <u>손해</u>로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p> <p>⑥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원자력<u>손해</u></p>	<p>문구를 보다 논리적으로 수정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1. 시설의 정상운전에 따른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p> <p>2.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시설 외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운송용구(구내전용은 제외합니다)에 적재작업이 끝난 후에 시설 외로부터 시설 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운송용구(구내전용은 제외합니다)로부터 하역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핵연료물질 등에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p> <p>3. 원자력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10년이 지난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핵연료물질 등이 도난, 분실, 투하, 내버려진 경우에 그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그와 같은 도난 등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이 지난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p> <p>⑦ 일반재해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p> <p>1. 시설의 정상운전에 따른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p> <p>2. 차량(동력이 인력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항공기 또는 선박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제외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p>	<p>1. 시설의 일상운전 중에 관계당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의한 누적손해로 인한 배상책임</p> <p>2.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시설 외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운송용구(구내전용은 제외합니다)에 적재작업이 끝난 후에, 시설 외로부터 시설 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운송용구(구내전용은 제외합니다)로부터 하역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핵연료물질에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p> <p>3.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자력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원자력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10년¹⁾이 지난 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핵연료물질²⁾이 도난, 분실, 투하, 내버려진 경우에 그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그와 같은 도난 등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p> <p>⑦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일반손해</p> <p>좌 동</p> <p>좌 동</p>	<p>보험 폴안의 “핵연료물질_등”에서 밑줄 친 “등”을 삭제시킴.</p> <p>1)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3조의 2 제1항과의 조화필요성</p> <p>2) 보험 폴안의 “핵연료물질_등”에서 밑줄 친 “등”을 삭제시킴.</p>

현행	개정안	비고
<p>3.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행하는 의료상의 조치 또는 그 결과로 생긴 배상책임</p> <p>⑧ 피보험자가 제16조의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그러나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p>	<p>좌 동</p> <p>⑧ 피보험자가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제16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그러나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의료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p> <p>⑨ 제3조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 자체에 대한 방제조치와 관련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p>	추 가
<p>제 9 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p>	좌 동	
<p>제 10 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이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좌 동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제 11 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2. 관계당국의 시설검사, 성능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결과에 따른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3.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 <p>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5조의 2항에 따릅니다.</p>	<p>좌 동</p> <p>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에 따릅니다.</p>	<p>단순 문구수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 12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p> <p>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p> <p>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p>	<p>좌 동</p>	
<p>제 13 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p> <p>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 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p>	<p>좌 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2. 제11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p> <p>3. 상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p> <p>③ 위 제2항의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 제2항의 1, 2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p> <p>제 14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p> <p>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p> <p>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비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p> <p>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계약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이후의 계약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p>	<p>③ 위 제2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 제2항 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p> <p>좌 동</p>	<p>단순 문구수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 15 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 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의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을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좌 동</p>	
<p>제 16 조(손해방지의 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존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응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 일 	<p>좌 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p> <p>1. 위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p> <p>2. 위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되는 부분을 뺍니다.</p> <p>③ 위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제 1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p>	<p>1.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p> <p>2. 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p> <p>③ 위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좌 동</p>	<p>단순문구 수정</p> <p>단순문구 수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p> <p>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p> <p>제 18 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금청구서 2. 보험증권의 원본 또는 사본 3.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p>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상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 	<p>범위를 보다 제한시킴</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회사는 제2조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제 19 조(보상책임의 한도) 회사의 보상책임의 한도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p> <p>① 원자력재해의 경우 증권기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p> <p>② 일반재해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1재해당(동일한 원인의 사고의 재해를 말하며 재해의 시간과 장소 여하를 묻지 아니합니다)의 증권기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p> <p>제 20 조(보험금의 분담)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③ 회사는 제2조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① 원자력손해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동안의 총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p> <p>② 일반손해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동일한 원인의 사고의 손해를 말하며 사고의 시간과 장소 여하를 묻지 아니합니다)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p> <p>③ 기타비용(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비용)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p> <p>제 20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상법상 보험관련 관행 참조</p> <p>제 19조를 보다 논리적으로 수정함.</p> <p>제20조 문구수정은 기존 문구해석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함.</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p> <p>제 21 조(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p> <p>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p> <p>③ 회사는 위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p>	<p>②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p> <p>좌 동</p>	
<p>제 22 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p>	<p>좌 동</p>	
<p>제 23 조(청구권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p>	<p>좌 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24 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제 2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정소재지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p> <p>제 26 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p>	<p>좌 동</p> <p>제 2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국제조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p> <p>좌 동</p>	<p>제25조 문구수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할 조약과의 조화를 고려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p> <p>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본 특별약관 부속별표(이하 「부속별표」라 합니다)에 기재된 핵연료물질등을 시설내에 반입하거나 시설외로 반출하기 위한 운송중에 그 핵연료물질등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② 위 제1항의 운송중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등이 제4조의 통지서에 기재된 운송지에서 운송용구에의 하역작업을 완료할 때로부터 도착지에서 운송용구로부터의 하역작업이 개시되기까지를 말합니다.</p> <p>제 2 조(보험료) ① 예탁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는 부속별표에 따릅니다.</p> <p>② 회사는 보험기간 말일에 보험료를 확정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예탁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징 또는 돌려드립니다.</p> <p>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① 핵연료물질 등이나 그 용기 또는 포장의 망그러뜨림에 있어서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p>	<p>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본 특별약관 부속별표(이하 「부속별표」라 합니다)에 기재된 핵연료물질을 시설 내에 반입하거나 시설 외로 반출하기 위한 운송 중에 그 핵연료물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② 위 제1항의 운송중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이 제4조의 통지서에 기재된 운송지에서 운송용구에의 적재작업을 완료할 때로부터 도착지에서 운송용구로부터의 하역작업이 개시되기까지를 말합니다.</p> <p>좌 동</p> <p>1. 핵연료물질이나 그 용기 또는 포장의 망그러뜨림에 있어서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p>	<p>보험 플안의 "핵물질 등"이란 표현에서 "등"을 이하 모두 삭제시킴</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핵연료물질 등이 대한민국외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을 벗어난 때로부터 또한 핵연료물질 등이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영역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원자력 <u>재해</u>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p> <p>제 4 조(운송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핵연료물질 등을 운송할 때마다 빠짐없이 회사의 정해진 손해배상책임보험운송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합니다)로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② 통지서 기재사항중 통지당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예정통지를 하고 추후 그의 확정사항을 위 제1항에 따라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③ 위 제1항의 통지에 지체 또는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④ 통지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p>	<p>2. 핵연료물질이 대한민국 외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을 벗어난 때로부터 또한 핵연료물질¹⁾이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영역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원자력 <u>손해</u>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p> <p>제 4 조(운송의 통지)</p> <p>① 피보험자는 핵연료물질을 운송할 때마다 빠짐없이 회사의 정해진 손해배상책임보험운송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합니다)로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⑤ 회사는 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p> <p>제 5 조(보상책임의 한도) ① 이 특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한도는 부속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1운송마다 각각 이를 적용합니다.</p> <p>②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 보통약관 제19조의 규정은 이 특약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p> <p>③ 위 제1항의 보상책임의 한도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p> <p>제 6 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핵연료물질 등을 발송 또는 수령하는 원자력 사업자로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p> <p>제 7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p>	<p>좌 동</p> <p>제 6 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발송 또는 수령하는 원자력 사업자로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p> <p>좌 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구상권불행사 특별약관</p> <p>제 1 조 피보험자가 원자력재해에 대하여 제3자(불특정 제3자를 말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원자력재해가 발생한 후나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원자력 재해가 발생한 후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제 2 조 회사는 전항 본문의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p>	<p>제 1 조 피보험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3자(불특정 제3자를 말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후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좌 동</p>	<p>용어통일</p>
<p>풍수재 및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p> <p>우리회사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8조의 제2항의 3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홍수, 고조, 해일, 태풍, 폭풍우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풍수재가 직접, 간접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풍수재 및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p> <p>우리회사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홍수, 고조, 해일, 태풍, 폭풍우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풍수재가 직접, 간접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p>	<p>단순문구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보험금반환 특별약관</p> <p>제 1 조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법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동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 또는 면책이 인정된 경우에는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그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p> <p>제 2 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할 그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원자력재해에 대하여 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그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p>	<p>제 2 조</p> <p>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할 그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그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p>	<p>용어통일</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근로자재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p> <p>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의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가 업무상으로 입은 신체상의 원자력재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용된 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또는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법령(이하 「재해보상법」 이라 합니다)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p> <p>① 피보험자와 그의 종업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의하여 가중되는 배상</p> <p>② 재해보상법에 의하여 보상하는 당해 보상자 또는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나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p> <p>제 3 조(보상책임의 한도) 회사의 보상책임의 한도는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는 별도로 (1인당 원)으로 합니다.</p>	<p>원</p> <p>제 4 조(규정의 변경) 이 특약에서 보통약관 제8조 제6항 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제 5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p>	<p>번호수정</p> <p>번호수정 추 가</p> <p>추 가</p>

내 용	개 정 안	비 고
신 설	<p>보험료 분납 특별약관</p> <p>제 1 조 본 증권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납입하기로 특별히 합의한다.</p> <p>제1회 : 계약체결시 (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제2회 : 년 월 일(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제3회 : 년 월 일(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제4회 : 년 월 일(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p> <p>제 2 조 발생된 손해액이 납입된 분납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분납보험료를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p> <p>제 3 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p> <p>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약정한 기일 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 유예기간을 둡니다. 유예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p> <p>② 회사는 유예기간 만료 7일전에 계약의 효력상실을 예고하고 그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p>	

2002년 2월 체결된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증권

* 최종 체결된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증권의 내용은 본 정책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시한 초안의 내용과 거의 합치되고 있다고 평가됨.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증권

증권번호 원책(시)제 2001 - 032 호

보험계약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귀하

보험회사는 2001년 12 월 29 일자 청약서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및 기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오며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1. 피 보험 자 : 성 명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이 밖의 원자력발전소 운전역무에 관계되는 사업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2. 시 설 : 원자력발전소(영광 1,2,3,4,5,6)의 운전 및 핵연료 저장과 운반
3. 보험가입금액
 - 가. 원 자 력 손 해
 - 사고당 보상한도액 : ₩ 50,000,000,000
 - 보험기간보상한도액 : ₩120,000,000,000
{4호기 기준 연간보상한도액(1,000억원) + 1기추가시마다 100억원 증액}
 - 나. 일 반 손 해
 - 사고당 보상한도액 : ₩5,000,000,000
 - 다. 기 타 비 용
 - 보험기간보상한도액 : ₩10,000,000,000
4. 보 험 료 : 별지명세서 1.
납입기일 2002년 1 월 1 일
5. 보 험 기 간 : 자 2002 년 1 월 1 일 오후 4시
(365)일간
지 2003 년 1 월 1 일 오후 4시
6. 보험금지금지 : 서 울
7. 증권작성지 : 서 울
8. 증권작성일 2002년 1 월 1 일

보험회사명	분담비율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7.69%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7.69%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7.69%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7.69%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7.69%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7.69%
리젠트화재보험주식회사	7.69%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7.69%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7.69%
L G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7.69%
대한 재보험 주식회사	7.72%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7.6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7.69%
계	100%

이 보험증권은 상기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공동 보험증권으로서 각 보험회사는 상기 분담 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한국원자력보험"폴"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에 보내는 통지는 상기 전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로 간주합니다.

위 대표인 한국원자력보험"폴"

회 장 박 종 원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보험약관의 교부)

-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회사가 위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 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서 규정한 원자력손해 또는 일반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있어서

- ①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 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에 의하여 생긴 아래의 손해와 비용을 말합니다.
 1.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인적피해
 2. 재물의 망그러뜨림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 등 물적 손해
 3. 원자력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4.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
 5.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발생하게 할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제조치비용(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

함합니다).

- ② 일반손해라 함은 제①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아래의 손해를 말합니다.
 - 1.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인적피해
 - 2. 재물의 망그러뜨림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짐을 포함합니다) 등 물적 손해
- ③ 핵연료 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 ④ 원자력사고라 함은 원자력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제 5 조(보험료)

-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6 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중기)

-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 7 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② 피보험자가 제16조의 제1항의 2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③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승인을 받아 지급한 이자, 법률비용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조정비용을 포함합니다.) 또는 조사비용.
- ④ 피보험자가 제17조의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 8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의 사유로 인한 배상책임
 - 1. 전쟁, 침략, 외적의 행동,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 내란, 모반, 혁명, 반란 또는 군사나 찬탈정권,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외의 목적으로 한 피보험자의 무기 또는 그 밖의 전쟁용구의 제조, 공급, 관리 또는 사용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또는 이와 비슷한 풍수재
- ③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한 배상책임. 그러나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타인이 부담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계약으로 부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망가진 경우에는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가 입은 손해로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
- ⑥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원자력손해
 - 1. 시설의 일상운전(정상운전) 중에 관계당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의한 누적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 2. 핵연료물질(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시설 외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운송용구(구내전용은 제외합니다)에 적재작업이 끝난 후에 시설 외로부터 시설 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운송용구(구내전용은 제외합니다)로부터 하역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핵연료물질 등에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 3.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자력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원자력 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핵연료물질 등이 도난, 분실, 투하, 내버려진 경우에 그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그와 같은 도난 등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 4. 제4조 제1항의 3 및 4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우연한 원자력사고 이외의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 및 환경회복 비용
- ⑦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일반손해
 - 1. 시설의 정상운전에 따른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 2. 차량(동력이 인력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항공기 또는 선박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제외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행하는 의료상의 조치 또는 그 결과로 생긴 배상책임
- ⑧ 피보험자가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제16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그러나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의료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⑨ 제4조의 제1항 5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 자체에 대한 방제조치와 관련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0 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이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관계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2. 관계당국의 시설검사, 성능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결과에 따른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3.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
-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5조의 2항에 따릅니다.

제 12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 13 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1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 ③ 위 제2항의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 제2항의 1, 2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4 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비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계약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계약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 15 조(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 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의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을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16 조(손해방지의 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 2.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존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응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 1. 위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
 - 2. 위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③ 위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1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보험증권의 원본 또는 사본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상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조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보상책임의 한도)

회사의 보상책임의 한도는 아래와 같은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 ① 원자력손해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동안의 총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일반손해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동일한 원인의 사고의 손해를 말하며 사고의 시간과 장소 여하를 묻지 아니합니다)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기타비용(제7조 ②, ③ 및 ④ 항의 비용)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 20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위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2 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청구권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 24 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국제조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제 26 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본 특별약관 부속별표(이하 「부속별표」라 합니다)에 기재된 핵연료물질 등을 시설내에 반입하거나 시설 외로 반출하기 위한 운송 중에 그 핵연료물질 등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의 운송중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등이 제4조의 통지서에 기재된 운송지에서 운송용구예의 적재작업을 완료할 때로부터 도착지에서 운송용구로부터의 하역작업이 개시되기까지를 말합니다.

제 2 조(보험료)

- ① 예탁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는 부속별표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말일에 보험료를 확정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예탁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징 또는 돌려드립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핵연료물질 등이나 그 용기 또는 포장의 망그르뜨림에 있어서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 ② 핵연료물질 등이 대한민국 외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영역을 벗어난 때로부터 또한 핵연료물질 등이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영역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원자력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제 4 조(운송의 통지)

- ① 피보험자는 핵연료물질 등을 운송할 때마다 빠짐없이 회사의 정해진 손해배상책임보험운송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합니다)로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통지서 기재사항 중 통지당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예정 통지를 하고 추후 그의 확정사항을 위 제1항에 따라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위 제1항의 통지에 지체 또는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통지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보상책임의 한도)

- ① 이 특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한도는 부속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1운송마다 각각 이를 적용합니다.
- ②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 보통약관 제19조의 규정은 이 특약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위 제1항의 보상책임의 한도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핵연료 물질 등을 발송 또는 수령하는 원자력 사업자로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상권불행사 특별약관

제 1 조 피보험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3자(불특정 제3자를 말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후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 제1조의 본문의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풍수재 및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8조의 제2항의 3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홍수, 고조, 해일, 태풍, 폭풍우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풍수재가직접 또는 간접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반환 특별약관

제 1 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법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동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 또는 면책이 인정된 경우에는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그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 2 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의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할 그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그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제 1 조 본 증권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납입하기로 특별히 합의한다.

제1회 : 계약체결시(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제2회 : 2002년 4 월 1 일(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제3회 : 2002년 7 월 1 일(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제4회 : 2002년 10 월 1 일(년보험료의 25%)를 납입함

제 2 조 발생한 손해액이 납입된 분납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분납보험료를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약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 간의 납입 유예기간을 둡니다. 유예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유예기간 만료 7일전에 계약의 효력상실을 예고하고 그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원자력손해배상 실무지침서

3-1. 편찬 목적

대한민국 정부, 특히 원자력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이미 원자력사고를 대비하여 각종 비상대책을 마련하였음. 이 지침서는 이미 마련된 원자력사고 관련 비상대책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즉 원자력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구제를 위한 정부 부처, 원자력사업자 및 보험회사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항목을 언급하였음. 아울러 국내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지역이 비단 대한민국 영토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가상적 사례를 토대로 실무자가 최소한 파악해야 할 주요 항목들을 언급하였음.

이 지침서의 각 항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보험회사 및 학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해답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2. 지침서 체제

원자력사고로 말미암아 원자력손해의 발생이 감지되는 경우 원자력손해배상 체제의 가동에 대한 실무지침마련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여 우리가 피해국이 되는 경우;
- 대한민국 영토상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여 우리가 가해국이 되는 경우

참고로 동 지침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일환으로 OECD/NEA가 2001년 11월말 개최한 Workshop on the Indemnification of Damage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를 대비하여 사전에 배포한 질의서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을 정리한 것임.

I. 경보단계: 심대하며 급박한 원자력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각 항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답변은 첨부된 영문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1. 정책결정자의 확인

- a) 심대하며 급박한 원자력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공에 대해 어떤 방제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관할기관은 누구인가? 특히
 - 실내에 있도록 명령을 내린다든지, 방사능측정, 피난
 - 곡식 또는 축산물의 수확금지 또는 경제활동의 제한 등
- b) 동일한 원자력사고에 의해 영향을 입는 인접국과의 관계에서 만일 필요하다면 방제조치는 어떻게 협력되는가?
 - 만일 대한민국이 피해국이라면
 - 만일 대한민국이 원자력사고 발생국이라면
- c) 방제조치비용의 부담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인가?
- d) 만일 방제조치비용을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e) 그러한 보험금을 규율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2. 정보의 공개

- a) 원자력사고의 경우 정보교환과 원조분야에 있어 인접국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만일 있다면 협정의 명칭과 과정의 언급
- b) 국내에서의 정보공개절차에 적용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 서로 다른 중앙 관할기관 상호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 서로 다른 지방자치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 그리고 중앙기관과 지방자치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c) 만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방사능 피해가 감지된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관할 기관은 사고발생지국에 관련 정보를 (추후 새로이) 알려주는가 ? 그러한 관할 기관은 확정되어 있는가 ?

d) 누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일반적 사실을 알릴 책임을 지는가 ? (가령 사업자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인가 아니면 기타) 또한 누가 취해진 방제조치에 대해서 알릴 책임을 지는가 ?

e) 사실을 알릴 때 주로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가 ?

- 국내의 경우
- 인접국가에 알릴 경우

3.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사고발생시 원자력사업자의 보험회사의 개입

a) 누가 원자력사고 사실을 관련 보험회사에 알릴 책임이 있는가 ?

b) 보험회사는 항상 연락가능한가 ?

c) 원자력사고 가능성 경보시점부터 보험회사는 움직이는가 ?

d) 어떻게 보험회사가 가동하는가 ?

e)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접국에 혹시 원자력사업자의 보험회사 지부 내지 연락처가 있는가 ?

f) 만일 e)의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그들은 누구인가 ?

- 보험회사의 지부인가 ?
- 원자력사업자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정된 피해자 국가내에 설립된 다른 보험회사인가 ?
- 국내 보험폴의 서비스인가 ?

II. 사고발생단계: 실제 방사능 유출 및 현실적 손해발생

1. 원자력사업자의 보험회사의 현장개입 여부

a) 어떻게 보험회사가 활동하는가 ?

- 사고발생지국가 내에서
- 영향을 입은 피해발생국가 내에서

b) 원자력사고 발생시 원자력사업자의 보험회사는 피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 ?

c) 긴급지원금이 제공되는가 ?

d) 만일 c)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지불이 되는가 ?

- 사고발생지국에서 ?
- 피해를 입은 인접국에서 ?

2.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금 지급에 관한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a)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 사고 발생지국 내에서 ?
- 영향을 받는 인접국 내에서 ?

b) 어떤 경로를 통해 그러한 정보가 전달되는가 ?

- 국내의 경우
- 영향을 받는 인접국에게

3. 긴급지원금의 규모와 성격

a) 이 금액은 손해 내지 상황에 관하여

- 의료비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사고발생지로부터 피난한 사람들의 교통비, 임시거주비 및 식비가 포함되

는지의 여부

- 기타

b) 이 금액은 전액으로 지불되는지 아니면 분할되어 지불되는지의 여부

c) 이 금액의 최고한도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가 ?

d) 이 금액의 최고한도액이 있다면 예외적 상황에는 높일 수 있는가 ?

e) 이 금액이 지급되는데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가 ? 가령

- 이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가 ? 가령 신분증 제시 등

-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가 ?

f) 이 금액은 어떤 형태로 지불되는가 ? 가령 현금 내지 수표 등

g) 이 금액 요청을 다루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이미 긴급청구 구
좌가 만들어져 있는지의 여부

III. 사고 발생 후 단계

1. 사고발생국내에서의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여부

- a) 누가 아래 사항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가 ?
-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체제를 알리는 주체
 - 현행 재정적 담보체제나 상황을 알리는 주체
 - 관련 보험회사를 알리는 주체
 - 국가의 역할 내지 활동을 알리는 주체
 - 원자력손해배상절차, 특히 신청서류가 있는 곳이라든지 배상청구기간 등을 알리는 주체
- b) 인접국내의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든지 배상청구기간 등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는가 ?

2. 보험회사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조치들

- a) 보험회사는 원자력손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보건 관련 행정기관에게 즉각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알려야 하는가 ?
- b) 보험회사는 인접국가의 피해자를 치료하는 모든 보건 관련 기관과 병원에게 관련 국가내에 위치하는 자신의 대리점 내지 연락처를 알려야 하는가 ?
- c) 보험회사 또는 현재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있는 국가내에 위치하는 자신의 대리점이나 연락처를 피해자 자신 또는 상속인에게 알려야 하는가 ?

3. 손해배상청구 담당자

- a) 원자력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 b) 원자력사고 발생국과 영향을 받는 인접국내의 피해자의 기록작성 및 잠재적인 피해자의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 c) 원자력손해배상청구 자체의 담당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 d) 원자력손해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초기에 원자력사업자, 보험회사, 재판관할권을 갖는 국내법원과 관련 국가가 손해의 대략적인 견적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평가제도가 존재하는가 ?
- e) 어느 정도 원자력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가능한가 ? (가령 농업분야 등)
- f) 배상이 가능한 원자력손해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 g) 원자력손해배상이 가능한 손해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
- 인적 손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가 ? 가령 관련 사람들의 피난비용 및 임시거처 비용 ?; 상실수입분 ?; 의료진단비용 ?; 피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부분 ? 기타.
 - 물적 손해에는 오염물질 제거비용도 포함되는가 ?
 - 환경 손해 역시 포함되는가 ?
 - 비물질적 손해(지적 재산권)로서 가령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명성과 이미지 손상분 역시 포함되는가 ?
 - 방제조치비용이 포함되는가 ?
- h) 원자력손해배상청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I) 원자력손해배상청구를 법적으로 제기하는데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가 ?
- j) 원자력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가 ?
- k) 원자력손해배상의 관리에 있어 우선권이 인정되는가 ?
- l) 어떤 나라의 경우 (가령 프랑스) 만일 제공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이 부족할 것 같으면 관련 장관회의에서 원자력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을 형평스럽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가 ?

m) 만일 상기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 제공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이 청구된 전체 배상액수보다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결되는가 ?

4. 보험회사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청구의 중장기 관리

a) 혹시 보험회사와 인접국가내에 위치한 그의 대리점 또는 연락처간에 원자력사고의 중장기 관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가 ?

b) 인접국가의 보건기관과 병원은 보험회사에게 피해자 치료에 관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가 ?

c) 원자력손해배상청구의 중장기 관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5. 근로자 손해배상체제 공유영역

a) 근로자가 우발적으로 방사능 피폭된 경우,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요청되어지는가 ?

b) 상기 a)의 경우, 그러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c) 만일 근로재난보험제도에 따라 국가가 방사능 피폭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였다면 국가는 추후에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원자력시설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d) 방사능에 피폭된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제도에 의해 예정된 배상금의 총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차감액수를 책임있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가 ?

6. 청구권 행사방법

a) 집단적 소송이 가능한가 ?

b) 원자력사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직접소송이 가능한가 ?

- 원자력사고 발생지국 내에서

-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인접국 내에서

- c) 만일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이라면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 d) 피해자의 거주지 국가는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 e) 화해에 의한 해결방식은 예정되어 있는가 ?
- f) 만일 분쟁이 재판소에 제기된다면 어떤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가 ?
- g) 만일 한국의 국내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 재판소의 판결이 인접국에 제시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그러한 재판결과의 승인과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가 ?
- h) 보험회사에 의한 직접손해배상 절차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진 재판소에 의한 손해배상절차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

7. 원자력사고 발생지국가와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상호 조화문제

이하 질문은 대한민국 소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함.

- a) 만일 실제로 집계된 손해배상총액이 한수원(주)과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액수를 초과할 것 같은 경우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브뤼셀 보충기금협약이나 CSC에 가입하고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당해 관련 협약의 여타 체약국들에게 통고하는가 ?
- b) 어떤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국제보충기금협약의 여타 체약국들간에 통고 내지 협력이 이루어지는가 ?
- c) 어떻게 관련 국제협약에 예정된 3단계 절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속 성과 동일성을 가질 수 있는가 ? 만일 보험회사가 1단계(원자력사업자 부담분)에서 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할 주체가 된다면 2단계(원자력사고 발생지국이 제공할 국내기금)과 3단계(국제기금)에서도 같은가 ?

- d) 만일 피해평가를 행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보험회사의 정산인에게 있다면 그러한 결정사항은 원자력사업자와 국가 및 재판관할권을 갖는 국내법원에게도 구속력을 갖는가 ?
- e) 2단계와 3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계속 맡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조건은 무엇인가 ?
- f) 3단계에서 적절한 금액의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특히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언급하시오.
- 배상금액 산정시점 내지 기한
 - 정부 기여분의 정확한 산출방식 및 액수
 - 분할금에 의한 국제기금(3단계)에의 정부 기여분의 지급규정
- g) 특히 원자력사고 발생지국은 국제기금(3단계)에의 기여분을 사전에 미리 기금형태로 조성하는지의 여부 및 다른 국제기금협약의 체약국들로부터의 각출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 h) 만일 피해를 입은 인접국이 역시 국제보충기금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역시 국제기금의 일정액을 피해자인 자신의 국민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원자력사고 발생지국에 의해 청구되고 또한 그에게 이전되는 기금에 대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
- i) 어떻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사고발생지국 및 다른 국제보충기금협약 체약국들에게 관련 절차를 집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이자와 비용을 추구할 수 있는가 ?

INEX 2000

Workshop on the Indemnification of Damage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Questionnaire

As you know, a Workshop on the Indemnification of Damage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will be held on 26-28 November 2001,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Emergency Exercise - INEX 2000. In preparing this Workshop,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and the French authorities have decided to submit a questionnaire on the activation of the nuclear third-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regime in the event of a nuclear emergency, to the representatives of the so-named "active countries"¹.

Although the INEX 2000 Exercise is based on the scenario of the nuclear accident which was simulated on 22 May 2001 at Gravelines NPP, in order to optimise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it was deemed preferable to carry out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t compensation methods and mechanisms which would be applied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taking place in each of the active countries. You are thus invited to answer the questions first as a State victim of the nuclear accident simulated in Gravelines, and secondly as the Accident State. You are also encouraged when replying to these questions, to indicate any relevant texts governing the matter.

This questionnaire will subsequently serve as a basis for discussion during the Workshop and the representatives of active countries will be invited to express themselves on the various issues it raises.

Some of the questions in this document are more particularly addressed to countries with an electro-nuclear programme. Active countries which are also non-nuclear countries are therefore invited to simply respond to such question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pplicable.

¹ These are countries which, due to their geographical location with regard to the Gravelines nuclear power plant where the nuclear accident was simulated on 22 May 2001, are more particularly concerned by the application of the third-party liability regimes as a result of a nuclear accident in France with transboundary effects. They include Belgium, Germany, Ireland, Luxembourg, Netherlands,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I. ALERT PHASE - Grave and imminent danger of a nuclear accident

1. Decision-making

a) Which are the competent bodies to decide which types of preventiv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public must be taken in the event of a grave and imminent danger of a nuclear accident in your country, in particular in respect of decisions:

- on sheltering indoors, iodine administration, evacuation?

Local government

- on prohibition of harvesting and selling foodstuffs or other products, or on limitation of economic activities?

Local government

b) How would these preventive measures be co-ordinated if necessary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affected by the same event?²

- If your country were a victim state of the accident simulated in Gravelines?

Through bi-international co-operation

- If your country were the accident country?

Answer: in Northeast Asia region, no interstate coordination mechanism exists.

c) With whom does the cost for these preventive measures lie ?

Maybe operator

d) If this cost lies with the operator, to what extent does the operator take out insurance coverage to fulfil this obligation?

Same as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e) What are the conditions governing such insurance coverage?

Measures must be taken by the order of competent authority

² The consideration of preventive measures is likely to raise new questions, for instance on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adoption of measures which are manifestly inappropriate or contradictory by the accident country and the neighbouring countries,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liable for such measures.

2.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 Has your country concluded bilateral agreements with its neighbour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exchange of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 the event of nuclear accidents? If so, please specify the agreements and procedures for communication from one country to another.

(New) Republic of Korea ratified the two Vienna Convention (1986) but there is no concerned bilateral agreement with Japan nor China.

b) What is the applicable procedure f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t national level:

➤ between the various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By pre-established reporting infrastructur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emergency plan

➤ between the various local competent authorities?

(New) By pre-established reporting infrastructur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emergency plan

National emergency plan

➤ between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National emergency plan

c) How would your national authorities organise feedback of information to the accident country on the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the accident in your country?

Central government

d) Who is responsible for disseminating general information to the public³ regarding:

➤ the event?: the public authorities? at national or local level?

➤ the operator? Central government ?

other

Answer: Central Government, i.e., MOST(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preventive measures taken? the public authorities? at national or local level?

the operator?

other

Answer: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³ If this responsibility lies with different bodies depending on whether the accident occurs in your country or in a neighbouring country, please specify the competent bodies in each of these situations.

05/10/2001 - Revised version

e) What means are used for such communication:

➤ at local and/or national level?

Answer: Paging, radio, TV, web cite

➤ in neighbouring countries?

Answer: Through IAEA and bi-international co-operation

3. Intervention of the nuclear operator's insurer⁴

a) Who is responsible for informing the nuclear operator's insurer of the accident?

The insured(operator)

b) Is the operator's insurer permanently on call?

Yes

c) Is the operator's insurer mobilised as of the alert phase?

No

d) How does this mobilisation take place?

(New) By pre-established national emergency plan

e) Are there any agents/contacts of the nuclear operator's insurer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affected by the accident?

No

f) If so, who are they:

➤ a branch of the insurer?

➤ another insurer established in the country of the victim who is expressly designated by the operator's insurer to handle compensation claims? No

➤ the services of the national nuclear insurance pool? No

⁴ For the purposes of this question we presume that the accident occurred on the territory of your country.

II. ACCIDENT PHASE - Effective releases, presumed damage⁵

1. Intervention of the nuclear operator's insurer in the field⁶

a) How does the insurer operate in the field:

- in the accident state?
-
- Answer: investigation with re-insurer

➤ in affected neighbouring states?

Not available

b) What powers does the nuclear operator's insurer hav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 order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ersons evacuated?

No power

c) Are emergency assistance payments provided for?

Yes

d) If so, how are such payments made:
(New) by the nuclear operator's insurer

➤ in the accident country?

Answer: Over 50% of total insurance amount

➤ in the affected neighbouring countries?

Answer: by private international law mechanism

2.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regarding the emergency assistance payments⁷

a) Who is responsible for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regarding the availability of such emergency payments?

➤ In the accident country?

Operator

➤ In the affected neighbouring countries?

⁵ We have presumed that the questions concerning preventive measures also apply to this phase. If different procedures are provided for, please indicate them.

⁶ For the purposes of this question we presume that the accident occurred on the territory of your country.

⁷ Idem.

(New) by central Government

b) How is such information transmitted:

- at local and/or national level?

By Operator

- in neighbouring countries ?

(New) by central Government

3. Nature and amount of the emergency assistance payment⁸

a) What types of damage or situation does this payment cover?

- medical expenses? Yes
- costs in relation to transport, temporary accommodation and food for persons evacuated from the place of the accident? Yes
- other

b) Is this payment in the form of a lump sum?

None

c) What is the maximum amount for an emergency assistance payment?

None

d) Can this maximum amount be extended in certain exceptional circumstances?

No

e) Do there exist criteria upon which emergency assistance payments are granted? None

- What formalities need to be performed to receive such aid (e.g. presentation of an identity card)?

None

- Are victims required to prove damage?

Yes

⁸ Idem.

05/10/2001 - Revised version

05/10/2001 - Revised version

f) How is the emergency assistance payment made (in cash etc.)? In cash

g) Is an emergency claim account established in advance to facilitate treatment of requests for emergency payments? Yes

III. POST-ACCIDENT PHASE

1.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the accident country⁹

a) Who is responsible for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 entitlements to compensation for possible damage?

Operator

➤ nuclear third-party liability regime in force?

Operator

➤ financial cover?

Operator

➤ identity of the insurer?

Operator

➤ role of the State?

Operator

➤ steps to be taken to bring a compensation claim, in particular the addresses where forms can be found and the time limit to submit a claim?

b) Is the same information disseminated to victim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and within what time limit?

None

⁹ Idem.

2. Actions taken by the insurer to make itself known¹⁰

a) Does the insurer immediately identify itself to the national health authorities in the country/countries affected by the nuclear damage?

No

b) Does the insurer provide all health establishments and hospitals which treated victim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with the details of its agent/contact point in each country concerned?

No

c) Does the national insurer or its agent/contact point in the countries where the victims received treatment identify itself to these victims or their next of kin?

No

3. Compensation claims handling^{11 12}

a) Who is responsible for handling these claims?

Court is responsible with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 of most

b) How are the inventory of the injuries, the identification of potential victims in the accident state and the neighbouring countries organised? Not available

c) With whom do the claims handling costs lie?

Person who is liable (operator)

d) Is there a system providing for an "initial estimate" of the extent of the damage which would allow the operator, insurer, the competent court and the State establish a rough estimate of the damage?

Yes. Advisory committee

e) How is the mobilisation of qualified experts (for example in the agricultural field) organised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the damage assessment?

Not available

f) Who is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types of damage subject to compensation? By the court finally

¹⁰ Idem.

¹¹ Claims handling is understood to mean the registration and payment of compensation claims.

¹² Furthermore, for the purposes of this question we presume that the accident occurred on the territory of your country.

05/10/2001 - Revised version

05/10/2001 - Revised version

g) What heads of damage are subject to compensation? Please specify if necessary.

- damage to persons? expenses related to the evacuation and accommodation of the public?
Yes
lost income ? Yes

expertise expenses, medical examination expenses? Yes

personal injuries? Yes

- property damage? Yes decontamination expenses? Yes

- damage to the environment? Yes

- non-material damage (e.g. loss of reputation, image etc;)? Maybe no

- preventive measures? Yes

h) What is the procedure for compensation claims?

Notification by victims – investigation – decision of payment

i) What is the applicable time limit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claims?

3 years from knowledge of the damage and person liable within 10 years from the accident (provided that in case of personal damage, 30 years)

j) How is compensation paid ? Cash

k) Is there a priority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of claims? No

l) In France, if it appears that the compensation amounts available are likely to be insufficient, a decree adopted in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published not later than 6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accident shall recognise this exceptional situation and specify the manner in which the available sums are to be disbursed equitably¹³. Does such a system exist in your country?

No. there may be a pro ration.

m) If not, how is compensation distributed if the financial security available is insufficient?

Operator should pay the shortage.

4. Medium and long term administration of the compensation claims by the insurer¹⁴

a) Are there any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insurer and one or more of its designated agents/contact points in neighbouring countries concerning the medium and long term management of accidents?

No

b) Do the health establishments and the hospital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transfer information on the progress in victims' treatment to the insurer?

Not available

c) How is the medium and long term management of the compensation claims organised in general?

Not available

5. Interface with the worker compensation regime

a) Where workers are subjected to accidental exposure to radiation, to whom should they address their compensation claim for damage suffered?

By th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 On which legal basis is such compensation granted?

Disaster compensation insurance law

c) Does the State have a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operator of the installation where the accident occurred in order to reimburse the compensation paid to the exposed worker pursuant to the work-related accident insurance regime?

No. operator is the insured.

¹³ Section 13 of the French Law.

¹⁴For the purposes of this question we presume that the accident occurred on the territory of your country.

d) If the amount of damage suffered exceeds the compensation limit established by the legislation governing insurance for work-related accidents, are exposed workers entitled to obtain the difference from the operator?

6. How to exercise claims

a) Is it possible to group compensation claims (“class actions”)?

No but general rule of civil procedure

b) Is it possible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operator’s insurer: Yes

➤ in the accident State?

Yes

➤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Maybe Yes. By mechanism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 If not, how can victims living abroad bring proceedings?

No special consideration or rule for foreigner. Republic of Korea is not a party to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d) Does the State of residence of victims assist them in entering their compensation claim etc.?

(New) if there is no special agreement, the concerned State can not assist them until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e) How can amicable settlement be organised?

By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f) If a dispute is brought before a tribunal, which tribunal will have jurisdiction?

Tribunal is determined by the Civil Procedure Code.

g) Given that in the INEX 2000 exercise the competent court will be in France, how will the decisions of this court be transmitted to neighbouring countries and how will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those countries be controlled?

(New) In Korea, in principle, we need the conclusion of bilateral agreement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 If there exists such agreement the competent court will control foreign judgement.

h) How will the interface between the procedures for direct compensation by the insurer and the competent court before which compensation claims will have been brought be organised?

05/10/2001 - Revised version

(New) information not available

7. The interface between the accident State and the international nuclear third-party liability regime

a) How will the accident State inform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to the BSC when it appears that the damage may exceed the compensation tiers for which the operator and the accident country are responsible (175 million SDR ; in France, 1,5 billion French francs)?

Korea is not a party to ant international convention.

b) More generally, how is the interface organised between the accident State and the other countries Parties to the BSC?

(New) hereafter the questions seem not concerned to Korea, so we would like to refrain to answer.

c) How is the continuity and uniformity of compensation claims handling for the three tiers guaranteed? If the insurers are responsible for the handling of claims under the first compensation tier (operator tier), will that also be the case for the second tier under the BSC (i.e. the sum between 600 million and 1,5 billion French francs provided from installation state funds) and the third tier (called "the international tier", between 1,5 billion et 2,5 billion French francs)?

d) If this is the case, will the power of decision in relation to loss adjustment remain with the insurer's adjusters and will their decisions be binding on the operator and the State as well as the competent court?

e) What would be the terms of remuneration of the insurers for their work in handling the claims in respect of the second and third tiers?

f) How are sums due under the third tier to be organised? In particular, how are the following issues decided:

- the reference date for calculating indemnities?
- the exact calculation of national contributions?
- Provision for payment of national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tier by instalment?

05/10/2001 - Revised version

g) In particular, will the accident State “advance” the funds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tier and if so, how will it be reimbursed by the countries concerned at a later stage?

h) If a neighbouring State, Party to the BSC, is entitled to a certain amount of compensation to indemnify its national victims of the accident, how can that State exercise such a right, particularly in relation to funds it is required to provide pursuant to the BSC?

i) How will the interest and costs as set out in Article 7(g) of the PC and Article 3(f) of the BSC be charged to the operator, the accident state or other BSC countries respectively?

4.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담보 방안연구

4-1. 문제제기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는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예컨대 해일 또는 지진 등으로 말미암은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제3조1항)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제5조 1항)

이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배상조치의 형태로는 첫째, 국내 보험회사와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원자력손해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둘째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와 특별계약 즉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동.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의 범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음.(원자력손해배상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구책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현행 법령과 보험약관 상 ‘심대한 천재지변, 예컨대 해일 또는 지진’ 등으로 말미암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중복배상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하에서 일단 관련 국내법령 및 보험약관 등을 비교 검토한 연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함.

4-2. 현행법령 검토 및 해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기존 제3조 후단은 ‘다만, 그 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면책되고 있었음. 따라서 국가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약관을 체결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그러나 현행 제3조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에 의해 해결함이 적절함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이 정하는 정상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제1호 이외의 손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원자력손해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운전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3.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원자력손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 등

②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일·홍수·폭풍우 또는 낙뢰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조(보상손실의 보상)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력사업자가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등에 의한 원자력손해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한 경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를 보상한다.

1. 정상운전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해일·홍수·폭풍우 또는 낙뢰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

해설: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약관은 원자력손해 배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원자력손해를 ‘정상운전등에 의해 생긴 원자력손해’ 범주에 넣고있으며, 더욱이 해일·홍수·폭풍우 또는 낙뢰 등 천재지변과 유사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정부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으로 담보하고 있음. 이는 밑에서 검토하는 원자력사업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중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의 사유로 인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또는 이와 비슷한 풍수재

상기 보통약관의 풍수재 및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8조의 제2항의 3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폭풍우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풍수재가 직접 또는 간접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설: 원자력사업자와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자력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을 계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특별약관에 의해 이러한 부류의 손해 역시 보험에 의해 담보되고 있음. 따라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와 중복되고 있는 실정임.

4-3. 결론 및 제안

이상 관련 법령과 보험약관을 검토해본 결과

- 원자력사업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자력사고로 말미암아 원자력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더 이상 면책되지 아니함. 따라서 스스로 보험을 통한 배상조치를 취해야 함. 이는 원자력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관련 약관은 계속해서 천재지변의 경우 역시 국가가 원자력사업자를 위해 담보를 서주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원자력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책임보험 특별약관과 보상계약 약관에 의해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중으로 지출을 하고 있음. 이는 재정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와 정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피해자 구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은 향후 천재지변 관련 조항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보험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

5. 3억 SDR을 초과하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주체 및 조치방안

5-1. 문제제기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는 과거와는 달리 일 원자력 사고당 3억 SDR 한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함.(제3조의 2, 1항) 그런데 만일 총액 3억 SDR을 초과하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청구하는 잔여 배상액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해석상 애매모호함.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 SDR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3억 SDR을 배상하고 남은 7억 SDR은 누가 배상하는가? 물론 원자력손해 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제14조 1항)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의결에 따른 조건 및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제14조 3항)

결국 문제의 초점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원자력사업자의 유한책임제도에 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3억 SDR을 초과하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잔여배상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만일 원자력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될 것임.

5-2. 현행 법령에 따른 배상가능액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의2(배상책임한도) ①원자력사업자는 1원자력사고마다 3억 계산단위의 한도안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①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제6조(배상조치액) 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될 결과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배상조치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정부의 조치) ①정부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며 또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

②정부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가 제1항에 의한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배상조치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1. 열출력이 1만키로와트 이상인 원자로의 운전
가.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은 500억원
나.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은 60억원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보험가입금액

가. 원자력손해

- 사고당 보상한도액: 500억원
-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1,000억원

해설 1: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와 배상조치액의 간극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구 법률과는 달리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 원자력사고당 3억 SDR로 한정시키고 있음. 즉 유한책임으로 전환한 것이며, 3억 SDR은 대략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됨. 그런데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과 그에 근거를 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은 최근에 대폭인상되었지만 최대 1,000억원으로 배상책임한도액수에 4,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임. 만일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여 3억 SDR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배상을 어떤 경로로 행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정부는 국회를 통해 재정원조를 할 수 있는걸까? 아니면 원자력사업자는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하는걸까?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처럼 배상조치액수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배상책임한도액수와 배상조치액을 동일하게 만드는 방안임. 그러나 이렇게 되면 원자력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난점도 안고있음.

해설 2: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수를 초과하는 사고발생의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는 만일 국내에서 심대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여 국내는 물론 인접한 국가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임. 이 경우 외국인으로서 피해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했던 각종 대형사고를 염두에 둔다면 그 청구액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일 것임. 대한민국의 원자력사업자는 배상책임한도액수와 배상조치액의 간극을 용인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해설 1참조) 3억 SDR을 초과하는 배상액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구제방법은 국회의 개입가능성인데 이 역시 정부 및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임.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보충기금협약(CSC)에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고 이 경우 배상절차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 가령 국내 분담금형성주체 및 기존 국내법령의 재정비 등은 본 정책연구과제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결론 및 건의사항

1. 최근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원자력사업자와 보험회사간 체결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 보험약관을 검토하였으며, 현행법을 반영한 개정 약관안을 제시하였음. 그 결과 2002년 2월에 체결된 새로운 보험약관은 본 정책연구의 결과를 상당부분 반영하였다고 평가됨.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수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한도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심대한 원자력사고 발생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 향후 원자력정책수립시 재고되어야 할 사항임.
2. 2001년 11월 OECD/NEA가 개최하였던 원자력손해배상 세미나에서 각국 전문가에게 사전에 배포되었던 설문지와 그에 대하여 책임연구자가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였음. 이 실무지침서의 내용은 실제로 원자력사고 발생시 관련 정부부처, 원자력사업자 및 보험회사 상호간에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구제를 위해 고려해야할 주요 항목들을 담고있음. 가능하다면 실무지침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전문가회의를 통해 국내조치방안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자력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대해 원자력사업자는 더 이상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조치를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됨. 현행 보험체계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본 결과 후자를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음.
4. 원자력사업자의 배상한도액수인 3억 SDR을 초과하는 심대한 원자력사고시 그 초과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형성하는가에 대한 답변모색은 현행법 체제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 상 -